「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4. 3. 1. 제정 판 (시행 1998. 3. 1.) →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바뀜 6 · 신설 0 · 삭제 1 · 번호 변경 1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17/compare?from=541&to=543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18:2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 정보전산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전산원 각 실습실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2. 행정 전산 업무에 관한 구축 및 운영 3. 교수 연구 지원 및 학생 실습(정규 수업 지원 포함)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 관리 5. 정보전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 6. 정보전산교육에 대한 교내외 각 기관, 부서 및 교직원과 학생의 자문에 대한 응답 7.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교육 8.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조(업무)** 정보전산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전산원 각 실습실의 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리 2. 행정 전산 업무에 관한 구축 및 운영 3. 교수 연구 지원 및 학생 실습(정규 수업 지원 포함)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 관리 5. 정보전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 6. 정보전산교육에 대한 교내외 각 기관, 부서 및 교직원과 학생의 자문에 대한 응답 7.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교육 8.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조직) 정보전산원에는 원장 및 다음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원장 ≣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정보전산원을 대표한다. ≣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원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과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장 1명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4. 조교 약간 명 5. 정보전산원은 개발운영팀, 전산지원팀, 네트워크관리팀, 정보보호팀으로 구성한다. ① 개발운영팀 학사 행정 지원 Application 개발 Mainframe 운영 ② 전산지원팀 전산교육 지원 사용자 지원 전산자원 관리 ③ 네트워크관리팀 전산망 관리 홈페이지 관리 ④ 정보보호팀 전산보안 관리	**제3조(조직)** 정보전산원에는 원장 및 다음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원장 (1)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정보전산원을 대표한다. (2)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원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4. 조교 약간 명 5. 정보전산원은 개발운영팀, 전산지원팀으로 구성한다. (1) 개발운영팀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2) 전산지원팀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전산정보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정보전산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전산과장(서기), 정보전산원 팀장, 관리과장, 대외협력과장, 교무과장, 재무실장, 도서관 전산담당, 전산 관련 교수 중 4명(삼육대학교 2명, 의명대학 2명)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전산정보원장으로 한다. 3.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교무부처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개발운영팀장, 전산지원팀장, 전산관련학부 전공교수(3명), 임명직교수(2명), 기획실 홍보담당, 도서관 전산담당, 교무과장 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1. 정보전산원의 재정은 학교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 2. 필요시 소정의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전항에 관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이용)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정보전산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정보전산원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전산원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① 교직원의 연구 ② 재학생 강의 및 실습 ③ 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 ④ 기타 정보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정보전산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용)**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정보전산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정보전산원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전산원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 (4)기타 정보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정보전산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및 운영 관리"를 "및 운용 관리"로 하고, "실습(정규"를 "실습(정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정보전산원에는 원장 및 다음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원장
(1)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정보전산원을 대표한다.
(2)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원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4. 조교 약간 명
5. 정보전산원은 개발운영팀, 전산지원팀으로 구성한다.
(1) 개발운영팀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2) 전산지원팀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제4조 중 "전산정보원"을 "정보전산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교무부처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개발운영팀장, 전산지원팀장, 전산관련학부 전공교수(3명), 임명직교수(2명), 기획실 홍보담당, 도서관 전산담당, 교무과장 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중 "1. 위원회"를 "①위원회"로 하고, "2. 위원회"를 "②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정보전산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정보전산원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전산원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

(4)기타 정보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정보전산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